

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3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6. 2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1999. 6. 22

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- 0 현재 운용중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업무추진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공코저함.

3. 주요골자

- 0 지역협력과 사무 삭제(안 제2조) - 공연신고
- 0 환경녹지과 일부사무 삭제(안 제2조) -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
- 0 도시과 일부사무 삭제(안 제2조) - 주택상환금 징수
- 0 건설과 일부사무 신설(안 제2조) - 소하천 점용등에 관한 사무중 일부사무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읍면에 위임된 사무위임 조례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
- 0 향후 지방자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사무의 범위가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익에 따른 경미한 다수민원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위임범위를 축소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6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